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알아보기



행정안전부

구 성

1부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2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3부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피해구제

4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상당한 제약 수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중요시됨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대한 사기, 명의도용을 통한
명예훼손 등 그 사회적 위험성 증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주요 손해 배상 사례

- OO은행 고객 3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 항소심에서 성명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1,024명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성명 · 이메일이 노출된 2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총2억5백만원 배상)('07. 11)
- OO텔레콤 블로그 서비스 이용자 중 이름, 휴대전화번호, 블로그 주소 등 2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07. 9월)
⇒ 피해자에게 7만원의 상품권 지급(총 1억7천5백만원 소요)
- OO전자 입사 지원자 정보 유출('08. 11월. 2심)
⇒ 개인정보가 노출된 31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 일본 야후BB 고객 약 451만 명의 정보유출('03년)
⇒ 전체 고객에 대해 사과 표시로 상품권 지급(총40억엔 소요)
⇒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야후BB 측의 보안조치 소홀을 인정하여, 1인당 6천엔 손해배상 결정('06. 5월)
- 미국, Choice Point 신용정보회사 14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소비자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1천만 달러 벌금 및 5백만 달러 손해배상(총140억원)을 결정('06.1월)
⇒ 동 금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상 최고액으로 1인당 \$107 배상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헌 법

공공 부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 부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III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III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의 성립요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사망하였거나 사망으로 추정 되는 자에 대한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 ✓ 사망자와 유족관의 관계를 나타 내는 정보는 유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함으로 인정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 임
- 예) 주소+성명 => ***에 사는 특정인
성명+전자메일=>***가 사용하는 메일
[전자메일 ID는 고유하게 부여되는 것임]

❖ 법에서의 정의(법제2조)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의 유형

- ❖ 개인정보는 일반정보(이름, 주민번호), 경제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 **민감정보의 수집은 제한됨**

- 단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할 경우 수집가능하며,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 민감정보란 ?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종, 민족, 사상, 신조, 정치적 성향, 범죄기록, 병력 등이 포함]

- ❖ 주민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 등 직접 식별정보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간접 식별정보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음
 - RFID에 의한 개인 위치정보 및 구매정보
 - 생체인식기술에 의한 바이오 정보
 - CCTV, 디지털카메라 등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유형을 통해..

- “민감 정도나 식별 정도를 고려하여 보안기준 혹은 권한설정을 달리하거나 공개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음”
-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가늠할 수 있음

-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컴퓨터, CCTV 등 정보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 모바일을 통한 행정서비스, T-Gov(IPTV)등 신기술이 접목된 행정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보호가 고려되어야 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참고〉 법률 적용 제외 정보 :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개인정보, 수작업 처리 일반문서에 수록된 개인정보(현행법으로 규제가능)

개인정보 특성 별 유형분류

유 형		개인정보의 예
일반 정보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 도서, 비디오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내역, 식료품 등 물품구매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신념/사상정보	-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금융정보	-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정보	- 개인 신용 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 기록부
	법적정보	- 전과, 범죄 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정보	- 통화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로그파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화상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적용대상

- ❖ 보호대상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 ❖ 따라서 수작업 처리되는 일반문서의 경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함됨
-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대상 개인정보
 -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 국가안전보장 관련 개인정보
 - 수작업 처리 일반문서에 수록된 개인정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치

1. 수집단계

2. 보유단계

3. 이용 및 제공단계

4. 파기단계

5. 웹사이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단계

✓ 수집 시 고려해야 할 2가지 원칙

민감정보수집금지의 원칙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음

예외)

- 법률에 수집대상으로 명시
- 정보주체의 동의

최소수집의 원칙

-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개인정보범위, 보유 및 파기
기간 등도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

개인정보 수집단계

✓ 개인정보 수집절차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수집사실이 안내되어야 함

수집사실 안내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근거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함

수집요건 확인

- 개인정보의 수집은 관계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단계 - 수집사실 안내

수집사실 안내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근거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함
[안내 예외사항 법 제4조제2항]

수집사실을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 국가의 안정 및 외교상의 비밀 그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
- 4)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5)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사실 안내 사례

- 공지방법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공지내용

보유근거	정부포상업무지침
보유목적	정부포상을 위한 기서훈 여부 열람, 상훈확인서 발급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주소, 직업, 소속, 직위, 공적사항
보유기간	영구

- 공지방법 : 국토해양부

- 공지내용

보유근거	지적법 제3조
보유목적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주요항목	토지·임야대장파일(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 도면번호, 축적 등), 대지권 등록 파일(행정구역 대지권 등록일련번호, 전유 구분(동, 층, 호, 실), 대지권지분비율 등)
보유기간	영구



관련 질의 사례

1. 이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예약한 이용자 정보를 1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지 여부 및 예약시스템이 아닌 도서관 홈페이지에 표시해도 되는 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도서관 웹사이트에 표시해도 무방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하더라도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타 기관과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 목적달성 후의 처리방법,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자발적·명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약시스템 운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지를 검토 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수단(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단계 -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조치하자

- 1)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명시적 동의가 이루어진 후 수집되어야 함
- 2) 사전설명과 명시적 동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소에 별도의 안내판이나 공지를 할 수 있음
- 3) 수집작성양식에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전설명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동의 방법

- 1) 서명날인에 의한 동의
- 2)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 3) 웹사이트상에서의 동의

개인정보취급정책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임이
명확히 나타나야 함

“경기넷”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경기넷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경기넷은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용약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모든내용에 동의하시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 동의

참고사항 –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CCTV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화상정보'로
CCTV의 촬영 영상에 의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CCTV 64%가 '몰카'

안내판 설치 공지 등 의무사항 준수 미흡

권리침해의
위험성

1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

2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공공기관이 CCTV 설치시 사전에 안내판 설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4%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안내판 설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초 14개 주요 CCTV 다량 보유기관의 CCTV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만2778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하철안전관리(26%)·방범용(18%)·교통정보수집(17%) 등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안내판 설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4%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안내판 설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의무화, 음성녹음기능 사용 금지 등이 준수되게 하기 위해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의견수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해 각급기관의 CCTV 관리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분야 CCTV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참고사항 –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CCTV 설치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
- 기관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CCTV 운영 위탁

- CCTV를 설치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설치 및 관리 위탁 가능
- 자격요건 및 위탁 절차 등을 마련
- 안내판에 위탁 사실 안내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 게재]

개인정보 보유단계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란?

-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
-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제공받거나 위탁 받은 경우는 제외됨

개인정보 보유범위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가능
-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유기관장이 일차적으로 결정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수집 시 안내된 보유기간 외 보유할 경우
기간을 넘어 보유하게 되는 개인정보, 목적, 법적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를 안내

개인정보 보유단계

개인정보파일 대장작성 및 관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하기

대장에의 기재사항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 3) 보유기관의 명칭
-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범위
-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통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
-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사유
- 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활용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보유단계

개인정보파일 열람조치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보주체의 정보열람을 위해서....

조치사항

- 1) 개인정보파일 대장 열람장소 지정(예 : 열람은 민원실에서)
- 2)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열람장소 고시(예 : 웹사이트와 민원실)
- 3) 열람접수 및 처리부서 내 개인정보파일 대장 사본 비치

<예시> 00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부서	열람장소
자동차 등록관리	OO 시 데이터 센터	각 구청 자동차 등록관리부서
이륜차 등록관리	OO 시 데이터 센터	해당구청 및 동사무소 이륜차 등록관리부서

개인정보 보유단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 전산실 등을 관리
- 입출력자료의 관리
-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준수사항

- 화면보호기 설정
-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설정 및 자동 로그아웃 조치
- 단말기 별 사용자 지정 및 ID 나 비밀번호 부여
- PC 보안을 위한 바이러스 체크, 폴더 및 파일 공유 해제 등
- 개인정보 기록된 저장매체 등에 암호화 등 비밀장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단계

보유목적내 이용 및 제공

- 보유목적(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및 제공가능

확인사항

- 1) 법령상 요청근거가 있는가
- 2) 보유 목적 외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포함되는가**
- 3)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한가
- 4) 제공을 요청한 목적에 적절한 개인정보항목인가
- 5)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가
- 6) 적절한 보안대책 등 처리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유의사항

-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
- 2)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공을 제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단계

보유목적 외 제공 가능한 예외적 사항

- 다른 법률에 근거할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단계

문서에 의한 이용 및 제공요청

• 이용목적, 미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통해서 요청 받은 경우만 이용 및 제공을 판단

● 문서를 통해 요청 받은 경우에만 이용 및 제공여부를 고려

문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내용

- 1) 이용 및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
- 2) 이용 및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단계

이용 및 제공 대장 관리

- 이용 및 제공사실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 제공받는 기관에 대해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을 제한하고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가능

● 개인정보이용.제공대장 작성하기

대장에의 기재사항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목적
- 4) 법령상 이용 및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 일자와 주기
-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8) 이용 또는 제공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 그 기간
- 9) 수령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활용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단계

안전성 확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용 및 제공, 보유목적 외의 이용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용 및 제공에서의 안전관리 조치

전기통신망에 의한 제공

송수신과정에서의 유출방지(행정전자서명, 관련 보안기술 적용)

저장매체에 의한 제공

송수신과정에서의 유출방지(행정전자서명, 관련 보안기술 적용)

● 보유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시 안내토록 함

안내내용

법적근거, 목적, 범위

안내방법

관보 또는 웹사이트

●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

- 제공범위, 데이터 가공여부, 제공파일의 형태에 따른 보안방법 등의 보호조치
- 제공된 처리정보(출력물 포함)의 파기방법에 대한 보호조치

● 제공받는 기관은 원래 보유기관의 기관장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정보제공을 중지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위탁관리

✓ 개인정보의 위탁이란

-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편집, 검색, 갱신 및 관리 등을 **당해 공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맡기는 것**

예) 학교 홈페이지 회원 관리,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전자메일 혹은 성명, 전화번호 제공행위 등

- 위탁기관이 행한 개인정보보호조치는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이 한 것으로 간주, **사무 위탁 시 철저한 관리 필요**

위탁관리계획수립

- 위탁관리 할 개인정보처리범위와 기간 등을 정의하여 계획서 작성

위탁계약 체결

- 위탁 계약 시 위탁기관이 지켜야 할 관리사항을 정의하고 책임을 설정

위탁사실 공개

- 정보주체들이 위탁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 공개

위탁기관 실태점검

- 위탁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개인정보 위탁관리

위탁관리계획수립 시 확인사항

- 위탁관리 할 개인정보 처리 범위, 기간 등의 위탁범위 설정
- 위탁관리 책임자 지정 및 확인

위탁계약 체결 시 필수 내용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위탁관리

위탁사실 공개 시 내용 및 방법



❖ 공개 내용

- 위탁사실, 목적, 기간
-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

❖ 공개 방법

- 관보 또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사무실 비치 시,
눈에 잘 띄는 공간에 부착]

위탁기관 실태 점검사항



- 개인정보처리현황 입출력 자료
- 개인정보파일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점검
- 수탁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안전성 점검 조치 확인

개인정보 파기단계

업무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개인정보삭제와 개인정보파일파기

- 개인정보삭제 및 파일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해야 함

파기사실 기록관리

- 개인정보삭제 및 파일 파기 시 대장으로 기록관리

파기사실안내

- 개인정보삭제의 경우 개별 통보
- 개인정보파일 파기의 경우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

개인정보 파기단계

개인정보삭제와 개인정보파일파기

- 개인정보삭제 및 파일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

● 사유 확인

개인정보 삭제 사유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

- a. 개인정보파일 보유 목적 달성시
- b.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 c. 이외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저장형태별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

- a. 재상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파기
- b. 파기여부 확인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 완전삭제]

출력물 형태

- a. 폐 휴지 수집업자에게 출력물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b. 직접 파쇄 조치후 매각
[매각 및 처리 위탁시 위탁관리와 유사하게 보호조치 강구]



개인정보 파기단계

파기사실 기록관리

- 개인정보 삭제 및 파일 파기의 경우 대장으로 기록관리

● 개인정보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작성하기

입출력자료관리대장

- 1) 개인정보파일명
- 2) 자료의 종류
- 3) 주요 기록항목
- 4) 사용목적
- 5) 자료발생일
- 6) 폐기일
- 7) 처리담당자 성명
- 8) 처리부서장

활용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활용

로그파일을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으로 활용 가능

개인정보 파기단계

● 개인정보삭제 기록대장 관리하기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음

활용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혹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안내할 수 있도록 삭제 및
파기사실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파기단계

파기사실안내

- 개인정보삭제의 경우 개별 통보
- 개인정보파일 파기의 경우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

●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

-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종합

웹사이트

CCTV

컴퓨터 등

사전활동

- 담당자 지정
- 책임,업무 명시
- 개인정보보호 방침

-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안내

수집

- 수집요건 확인
- 수집사실 안내

보유

- 물리적 관리(보호구역, 전산기기 등)
- 시스템 관리(사전영향평가 등)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보유파일대장/이용제공 대장관리
- 보유 및 제공사실 안내
- 사전협의

이용 및 제공

파기

- 즉시 삭제/파기
- 파기사실기록관리
- 파기사실 안내

권익보호

- 열람조치
- 정정 및 삭제조치
- 불복청구안내
- 침해신고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지정, 권한설정, 의무규정, 교육

개인정보위탁관리 : 계약, 사실공개,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관리

웹사이트 개인정보

(2007. 9)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보안관리가 허술해 악성코드 감염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위험하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 악성코드 감염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안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변조 사고가 38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최근 1년 평균인 17.8건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변조 사고는 지난 3월 8건에서 8월에 이르러서는 38건으로 급증했다.

변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주타깃이었다. 이곳에서 정보를 얻는 국민이 예기치 않게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를 통해 주요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내부 정책자료와 연구성과를 유출당할 가능성도 크다.

과거 홈페이지 변조사고는 해커 조직의 실력 과시용으로 발생해 해당 기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해커들이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것은 주요 자료를 빼거나 다른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한 경유지로 악용하기 위해서다.

A기관은 홈페이지에 제로보드 게시판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에 '웬물'이라는 악성코드가 올라져 홈페이지가 변조됐다. 해커는 이 악성코드를 이용해 A기관의 웹 서버를 해킹했고 비공개 자료를 유출했다.

B기관 역시 홈페이지 자료실에 해커에 의해

8월 변조사건 38건 사상 최다 기록
2차 공격 위한 경유지로 악용되기도
백도어 설치·자료 유출 여부 확인을

악성코드가 업로드 됐다. 해커는 이렇게 장악한 웹 서버를 다른 서버를 해킹하기 위한 경유지로 악용했다. B기관에 접속했던 개인들은 악성코드에 감염돼 게임ID와 비밀번호 등을 유출 당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안 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만 게시물을 올리게 하고 수정하는 웹 페이지에 비밀번호 인증뿐만 아니라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복합 접근제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 웹 방화벽 구축은 물론 게시판 프로그램의 항상 최신 버전으로 재설치하고 파일 업로드가 불필요한

게시판은 업로드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 NCSC 관계자는 "최근 홈페이지 변조는 단순 변조를 넘어 2차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며 "각 기관의 보안담당자는 홈페이지 변조됐음을 확인하거나 신고받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단순 변조 취약점 제거 이외에도 백도어 설치나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사고 조사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웬물 프로그램 =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는데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며 서버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asp, cgi, php, jsp 등이 있다. 웹 서버에 명령을 실행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웹 페이지 소스코드 열람은 물론 서버 내 자료 유출, 백도어 프로그램 설치 등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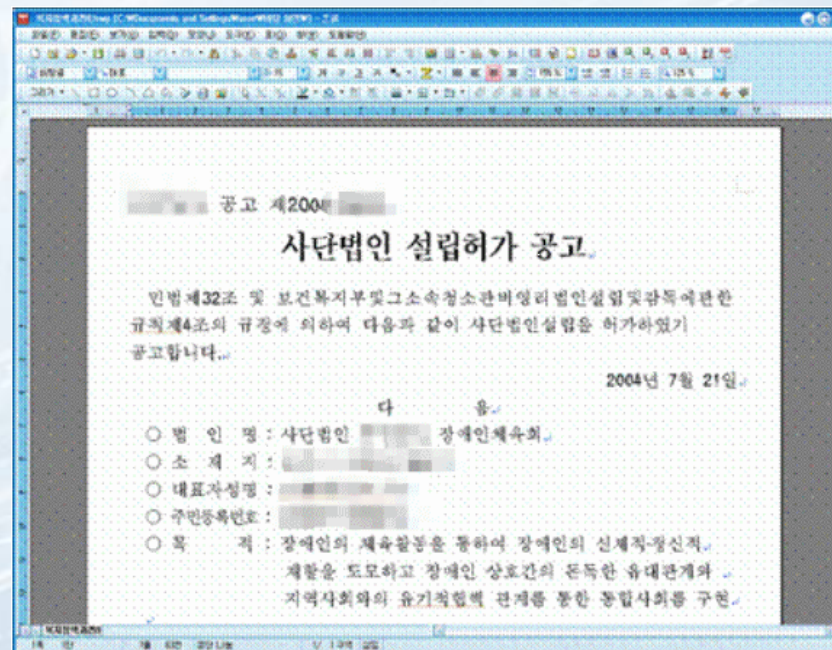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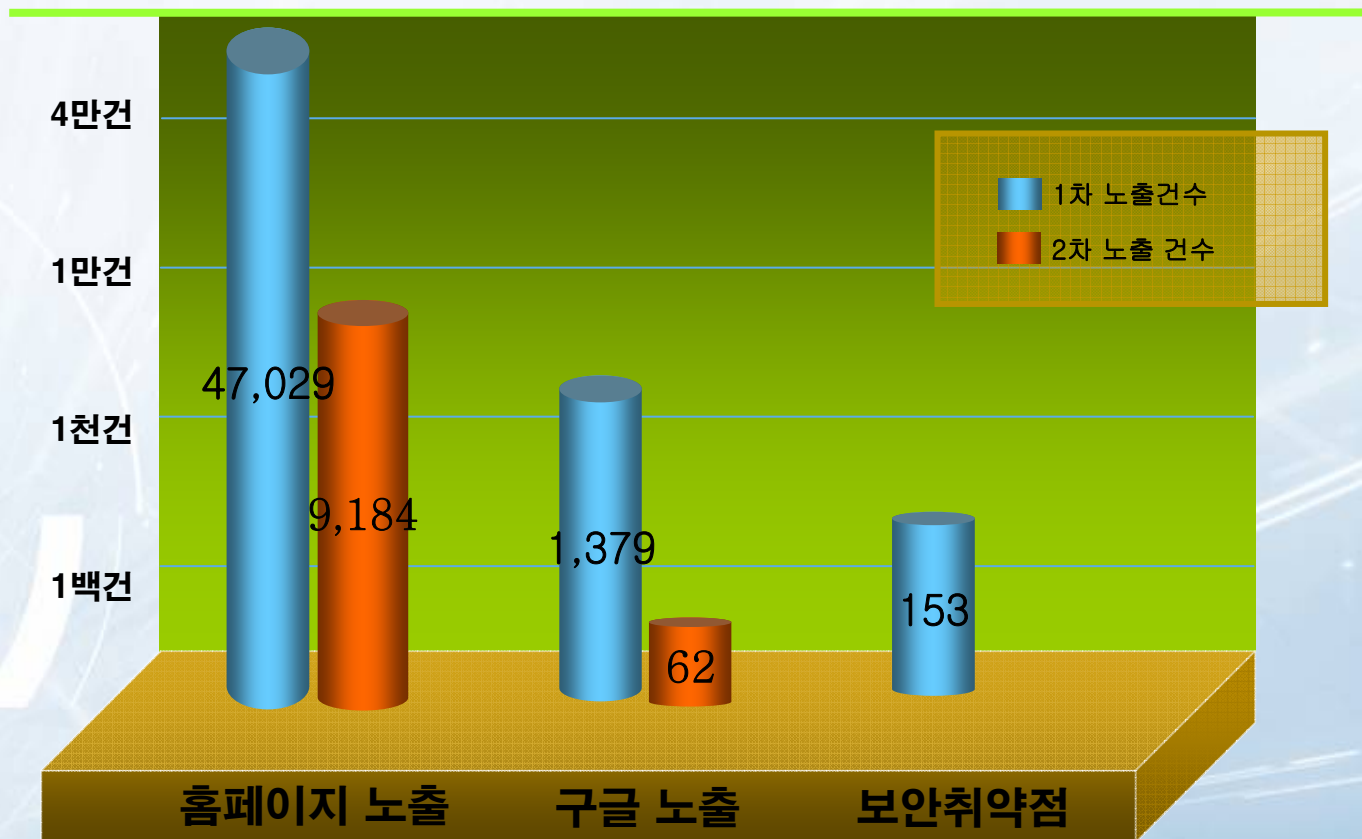
✓ 개인정보 노출이란?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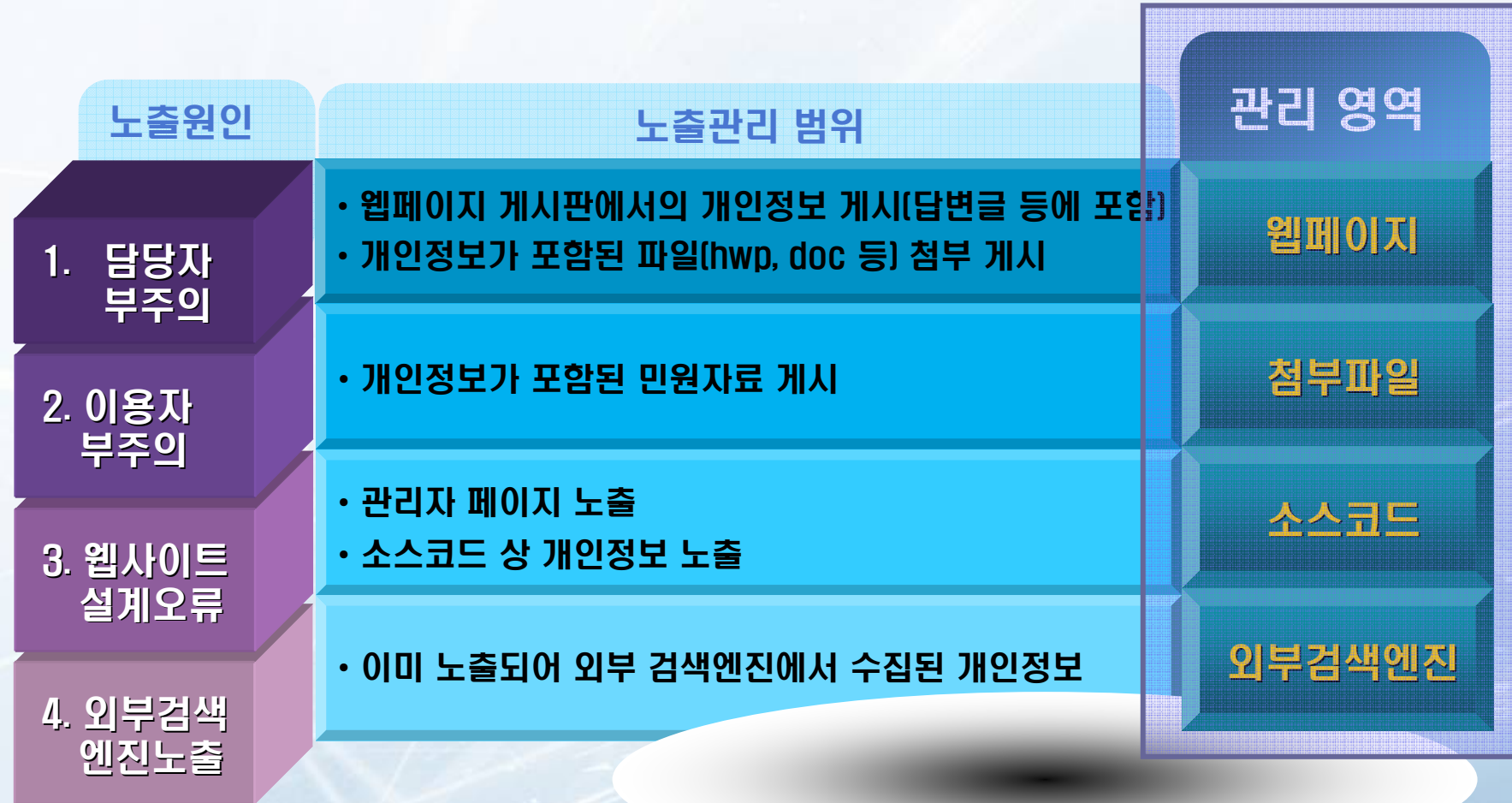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출처: 행정안전부, 2차 보안점검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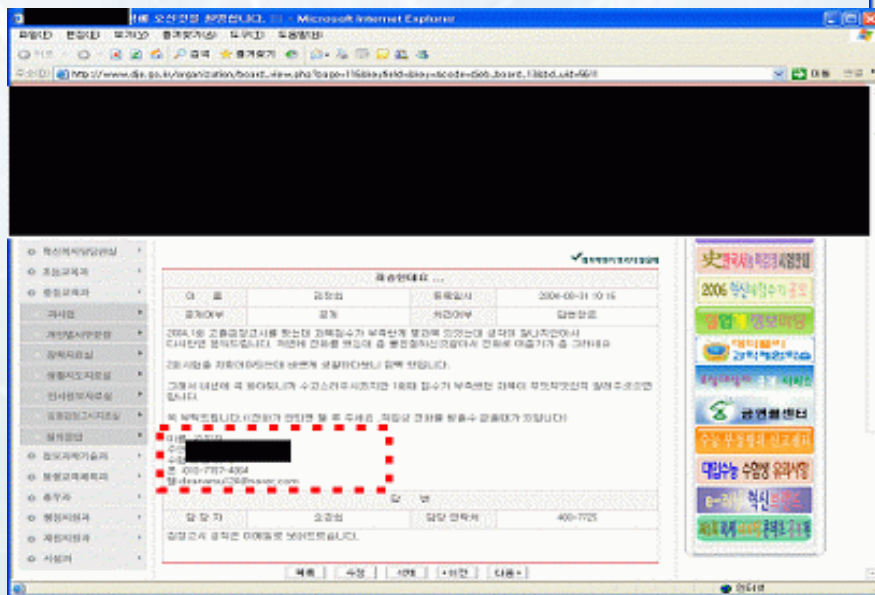
웹사이트 개인정보 - 노출 원인과 관리 범위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웹 페이지)

웹페이지

- **웹페이지 게시판에서의 개인정보 게시(답변글 등에 포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hwp, doc 등) 첨부 게시**



공시송달 공고

상업집합청장 및 공장청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율을 취소하고자 상업집합청장 및 공장청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물 사용 청결노선 심사, 수위안부제도 감사와 고압에 불가역(무손) 열간송하거나 청정물과자 의견미해로 되어 청정물사용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연 차 연	대 표 자	수 단 종류	소 재 지	연 종	비고
연간납세	김종 주	41 15	홍북동 98- 27	2470	
불사전지	김준 현	40 20	양천동 101- 2	2919	
(대형인사)	홍경 희	50 10	용곡동 619 6	3619	
부상자수	김종 영	40 10	가산동 298 1	1102	
배관설치	이진 일	41 10	신명동 530- 3	1102	
(주택임대료) 원	김민 호	40 20	복성동 100- 4	1101	
계량관리	한우 영	41 10	가산동 298- 1	1101	
대형인사	김경 호	50 10	경서동 1000-33	1106	
(주택인)	이진 일	41 10	신명동 530- 3	1104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웹 페이지)

관리방법

1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 일부를 *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2

민원인이 게시한 글의 경우 게시한 민원인의 동의를 거친 후 즉시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일부를 ** 처리해야 함

3

게시판에 개인정보 작성 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를 삽입

-게시판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노출된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안내할 수 있음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웹 페이지)

● 휴면 웹사이트를 관리하려면

휴면 웹사이트 란

- 장기간 동안 접속자가 없는 웹사이트
- 정상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웹사이트

휴면 웹사이트의 사례

- 테스트 용도로 개설된 후 방치된 경우
- 기관 부서의 신 웹사이트 구축 후 방치된 사이트
- 타 유사웹사이트로 통합 후 방치된 웹사이트
- 개편, 소멸, 청산된 조직의 웹사이트
- 폐회된 행사 웹사이트
- 종결된 업무 또는 연구개발 웹사이트
- 소유자의 전직, 퇴사 등으로 관리 부재상태인 웹사이트
- 다수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일 서버에서 방치되고 있는 비 활용 웹사이트
- 기타 접속이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웹사이트

휴면사이트 관리 방법

- 관리하는 웹서버 내에 잔존하는 휴면웹사이트를 모두 삭제
- 휴면웹사이트의 개인 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하여 삭제처리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첨부파일)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엑셀파일의 숨기기 기능, 다른시트 활용, 치환함수 적용에 의해 노출가능함

주민번호	주민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비고
[Redacted]	김영희	여	1234567890	
[Redacted]	이철민	남	2345678901	
[Redacted]	박수진	여	3456789012	
[Redacted]	정민준	남	4567890123	
[Redacted]	김민준	남	5678901234	
[Redacted]	정민준	남	6789012345	
[Redacted]	김민준	남	7890123456	
[Redacted]	정민준	남	8901234567	
[Redacted]	김민준	남	9012345678	
[Redacted]	정민준	남	0123456789	

주민번호	주민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비고
[Redacted]	김영희	여	1234567890	
[Redacted]	이철민	남	2345678901	
[Redacted]	박수진	여	3456789012	
[Redacted]	정민준	남	4567890123	
[Redacted]	김민준	남	5678901234	
[Redacted]	정민준	남	6789012345	
[Redacted]	김민준	남	7890123456	
[Redacted]	정민준	남	8901234567	
[Redacted]	김민준	남	9012345678	
[Redacted]	정민준	남	0123456789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첨부파일)

관리방법

해당 게시자에게 통보하여 게시판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후, 개인정보를 제거한 파일을 다시 업로드 조치함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외부검색엔진)

외부검색엔진

- 이미 노출되어 구글 등외부 검색엔진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유 형

1

구글에서 검색된 웹사이트에서의 노출

2

구글 DB에서의 노출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외부검색엔진)

● 관리방법

1

개인정보 즉시 삭제

2

검색엔진 배제표준이나 메타태그 적용

검색엔진 배제 표준 적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robots.txt 파일을 웹서버의 루트 디렉토리에 저장

User-Agent: *
Disallow: /

메타태그 적용

삭제하려는 웹페이지의 소스코드 파일(HTML 파일)에
<META NAME =
GOOGLEBOT"
CONTENT= "NOINDEX,
NOFOLLOW">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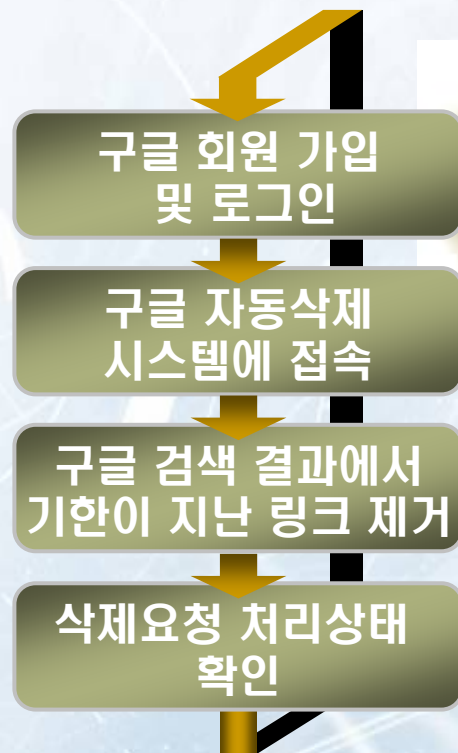


웹사이트 개인정보 - 원인 별 관리방법 (외부검색엔진)

● 관리방법

3

● 구글 자동삭제 시스템을 통한 저장정보 삭제



구글 자동삭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글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요청 후
6-8주가 소요됨

@ 상세한 절차와 확인방법은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것!

정보 주체의 권리 및 피해구제

1. 정보주체의 권리

2. 개인정보침해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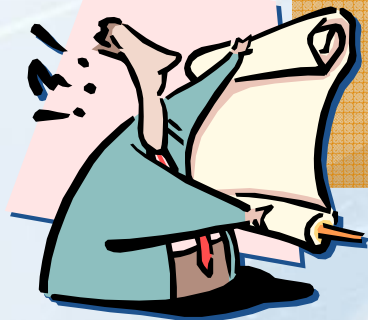
3.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수칙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존재에 대한 고지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 이의제기 및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의 권리 등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과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한다면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함

정보주체의 권리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 열람청구권
- 정정 및 삭제 청구권
- 불복청구권

- ❖ 열람 및 정정, 삭제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 확인방법〉

- ✓ 정보주체 :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대리인 :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 주민등록증 등
- ◎ 이외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주체를 확인함.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청구권

사전안내	열람장소, 열람예정시기, 열람제한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방침내 포함
열람청구접수	열람청구서 접수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열람허용여부검토	권리청구주체, 개인정보열람범위, 열람제한사항 확인	
열람결정통지	열람결정통지서 송부 : 청구서 받은날로부터 5일내 (즉시 열람의 경우 제외 가능) 열람제한결정서 송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열람	열람장소에 '주의문구' 게시 등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 정정 및 삭제 청구권

사전안내	열람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시 필요한 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방침내 포함
청구서 접수	정정 및 삭제 청구서 접수(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청구주체확인	권리청구주체 확인 (정정 및 삭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결과 통지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10일 이내 송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하여 송부 가능)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정정삭제연기통지서 송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다른 법률에 처리정보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대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름

● 불복 청구권 :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 침해신고

-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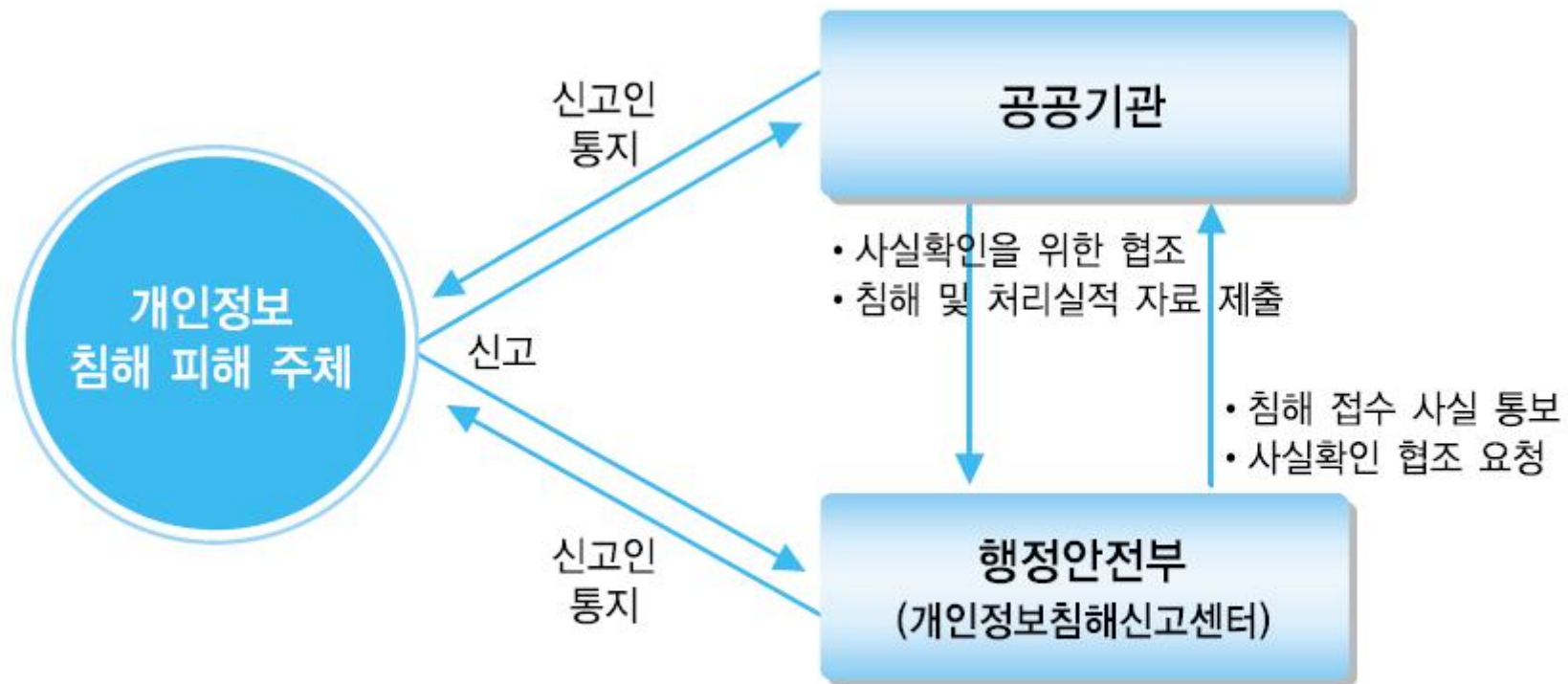
창구개설 방법

- 웹사이트
- 민원접수실

창구운영

- 침해사실 신고 접수(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사용)
- 침해사실에 대한 처리조치(시행규칙 별지 제1호 준용)
- 신고주체와 행정안전부에 처리결과 통보

개인정보 침해신고 방법



개인정보 침해신고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1.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은 관행이 아닌 법률근거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함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를 안전하게 관리
4. 개인정보처리사무를 제 3자에게 위탁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하나
5. 웹 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은 더욱 신중
6.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등은 정당한 요구
7. 개인정보 취급현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기
8. 보유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